



팅롱 정보기술 (북경) 유한공사 VS 북경 평원 과학 무역 유한책임공사 등 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0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중국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03)高民终字第1306号
판결 일자	2003년 12월 16일	판결 결과	상소기각(권리자 패)
원심원고(상소인)	팅롱 정보 기술 (북경) 유한공사		
원심피고(피상소인)	1. 북경 평원 과학 무역 유한 책임공사, 2. 자오메이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부정당경쟁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153조		
영업비밀	주파수 변환기 제어 프로그램 기술비밀		
키워드 (Keyword)	접촉(接触), 실질적 유사(实质相同), 합법적인 근원(来源和法)		

02 사건 개요

원심 원고 텡롱 정보 기술 (북경) 유한공사(이하 ‘팅롱공사’)는 1997년 10월에 설립되었고, 자오메이는 설립당시부터 텡롱공사의 총경리로 일하였다. 북경 평원 과학 무역 유한 책임공사(이하 ‘평원공사’)는 1996년 7월 설립되었고, 텡롱공사의 주파수 변환기 판매상이었다. 자오메이는 1999년 11월 말 텡롱공사를 사직하고, 2000년 1월부터 평원공사에서 일하다가, 2001년 상반기 평원공사에서도 떠났다.

사건 외 까오천핑이 1998년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텡롱공사의 주파수 변환기 상품의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까오천핑이 2000년 경 평원공사의 주파수 변환기 상품도 개발하였다. 텡롱공사는 2003년 경 평원공사 생산의 주파수 변환기 1대를 증거로 제시하며, 평원공사와 자오메이가 공동으로 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까오천핑의 ‘자신은 텡롱공사와 평원공사를 포함하여 중국 국내 여러 개 주파수 변압기 공장을 위하여 변압기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고, 평원공사 프로그램과 텡롱공사의 프로그램이 같지 않다’ 라는 증언에 근거하여, 텡롱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텡롱공사가 상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심 원고(상소인)	⇔	⇐	원심 피고(피상소인)
팅롱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VG-2000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텅롱공사의 상업비밀이다.			팅롱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VG-2000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텅롱공사의 상업비밀이 아니다.
평원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P-K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텅롱공사의 기술을 사용하였다.			평원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P-KA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텅롱공사의 기술과 다르다.
자오메이가 평원공사에서 주파수 변환기 생산, 판매를 도왔는데, 이는 텅롱공사 상업비밀 공동침해를 구성한다.			자오메이는 상업비밀 공동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04 판결 요지

자오메이가 텅롱공사 재직기간 동사장과 총경리 직무를 맡았고, 고급 엔지니어이기는 하나, 자오메이가 텅롱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촉하고 장악했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평원공사의 주파수 변압기 제어 프로그램은 까오친핑이 비용을 받고 개발한 것이므로, 기술의 근원이 합법적이다. 텅롱공사가 자오메이의 상업비밀 공동 침해의 증거로 제출한 <감자 승낙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며, 자오메이의 서명이 아니다.

결국, 텅롱공사의 상소이유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

05 Key Point

중국 상업비밀 침해 사건 판결에서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밀의 접촉 + 실질적인 유사 - 합법적인 입수경로”** 공식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 원고인 텅롱공사가 ‘기술비밀에 접촉’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평원공사 개발 프로그램에 합법적인 입수경로도 확인된다는 이유로, 텅롱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한국 법원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